

◆ 2021년 「지하수법」 이렇게 바꿉니다.

↳ 다만,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
※ 제21대 정기국회에서 「지하수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(20.12.9.)

□ 개정이유

-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,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,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,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- 또한, 지하수개발·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규정 등(안 제2조의2)
- 기초조사에 지하수 수질특성 및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명시하고, 현행 제17조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관련 조항을 이동(안 제5조 등)
- 지하수 보전·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의2)
-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의3)
-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의 사전신고 대상에 '지하수 개발·이용 신고대상 시설' 추가(안 제9조의4 등)

- 지하시설물 등의 설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,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'건축물 준공 후'에서 '지하층 공사 완료 후'로 변경함(안 제9조의2)
-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8)
-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·철거·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3항 등)
-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기존 지하수관측시설(국토교통부 소관, 수량 중심)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(환경부 소관, 수질 중심)을 지하수측정 시설로 통합·운영 규정(안 제17조 등)
- 지하수개발·이용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예외적 '면제'를 '감면'방식으로 조정하고, 부과·징수된 부담금의 사용 용도 제한 규정(안 제30조의3)
-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자는 2년마다 영업실적, 기술인력, 현황 등 보고 의무화(안 34조의3)
- 지하수개발·이용 신고 등이 '수리가 필요한 신고'임을 명시하고,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(안 제8조 등)
- 과태료의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,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(안 제39조 등)

□ 시행일

- 법안은 '21년 1월 공포 예정이며,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